

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시/장소	2021. 9. 9.(목), 14:00 /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(20층)		
사업명	도봉구 방학동 717-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(신규)		
신청위치	도봉구 방학동 717-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(구조)2021-13-4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

-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,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**인·허가권자가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구조안전 분야>

- APT평면 수평디어프램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-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시 지하연속벽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슬래브 면내 응력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.
- 철근($f_y = 600Mpa$)을 사용할 경우 규준에 의한 부재설계를 검토하기 바람.
- 건물 및 주차장 사이의 응력변화에 의한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.
- 전이부재에 벽체강성을 배제한 하중조합과 특별지진하중 조합에 의한 응력 값을 비교한 후 설계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.
- 시공성을 고려한 전이부재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
- 지하층 설치에 따른 인접건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.
- 지상 2층의 브릿지에 대한 사용성 검토나 양 접합부분에 대한 배근 보강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바람.
- 전이보가 상부 세대의 설비배관 등과의 간섭이 있는지 개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있을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- 전이층 하부의 기둥을 위한 전단보강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.
- 지하부 내진설계 반영사항 및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 하중조합 적용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.
- 지상2층 연결통로 익스펜션조인트를 적용하고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.
- 전이보 표피철근은 개수로 표현하고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 지진하중 적용상세(피로터 기둥상세)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.
- 슬래브 배근 @500, @600은 @450으로 적용하기 바람. (계속)

- 지하주차장 지붕층은 소방차량 및 이사차량 등 고하중 차량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.
- S-702도면 TG보 상세도에서 TG와 4층 슬래브가 단면상 이격됨(Diaphragm 미형성)으로 인해 TG 축력, 비틀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- 이형구조물임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하기 바람(풍과 지진하중의 크기와 거동을 비교하여 확인하기 바람).
- 평면(사선)형태상 전이보로 계획하기보다 전이 슬래브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라고(4층의 격막이 TG와 이격되어 있으며 전이기둥에 5개 이상의 보가 정착되어 실제 시공시 정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), 101동의 X1~2열 하부에 TB3의 경우는 기둥으로 정착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.
- TC7 기둥이 작아 전이보 5개가 정착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바라고,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도면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람.
- 101동-102동 2층 브릿지의 EJ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.
- 2~3층 슬래브(9mx8m정도)의 장기처짐을 확인하기 바람.
- 코어벽체의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확인하기 바람.
- 전이보의 배근이 과밀화 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.
- 건축도면 A-202 전이구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최하층에서의 설비배관의 유지관리가 불리하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.
- 건축도면 A-215 외기에 면한 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강화유리도어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, 승강기도어가 방화도어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주출입구 도어는 출입이 원활하도록 방화도어적용의 제외를 검토하고, 다만, 판매시설과의 방화구획을 위하여 공동주택 로비 및 방풍실에 면한 판매시설과의 간벽을 방화구획으로 하기 바람(좌측동의 출입구에도 같이 적용하고 방화문은 삭제하더라도 방풍실에는 적용하기 바람).
- 구조도면 S-301 102동 코어 주변 샤프트로 쓰이지 않는 삼각형 형태의 공간의 슬라브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동간의 연결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크랙이 발생함으로 인한 외부 페인트의 박리 등 외부 마감의 변경이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슬라브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(예 : 콘크리트 타설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층을 걸러서 적용).
- *아래의 조건사항들은 관련 내용을 본 위원회에 확인받기 바람.
 - 건축부지에 대해 추가 지반조사(탄성파)의 추가(최소 3개소 이상)를 검토하기 바람 (지반조사결과를 통한 구조설계 반영 확인 필요).
 -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포 눈막힘(폐색)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펌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고 해당 공법의 특기시방서,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. (계속)

-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 (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)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끝.

3/3

2021. 9. 9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